

광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55970(본소), 2020가합60661(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비 청구]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20513(본소), 2021나20520(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5597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피고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피고(반소원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차현영

변론 종결2020. 12. 11.

판결 선고2021. 1.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67,478,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반소원고)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1,430,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36,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07,397,601원,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1)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 돈 중
6,129,581원,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위 돈 중 75,220,0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42,462,9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앞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 원고는 피고 B, 피고 C과 2017. 2. 10. 서산 E아파트(이하 '서산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33,515,09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2. 1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 B과 2017. 2. 10. 서산 F동 무인텔(이하 '서산무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7,200,000원, 공사기간 2017. 2. 1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 B, 피고 D과 2017. 2. 10. 광주 G아파트(이하 'G동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0,125,912원, 공사기간 2017. 2. 1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서산아파트, 서산무인텔, G동아파트에 관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피고 B은 아래 표 '지급'란 기재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 표 '잔액'란 기재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서산아파트	433,515,094	419,826,308	13,688,786
서산무인텔	167,200,000	141,152,000	26,048,000
G동아파트	230,125,912	166,800,000	63,325,912
합계			103,062,698

○ 원고는 서산아파트에 관하여 저수조 변경, 무동력 벤치레타 및 좌대, 덕트제작 설치 등의 추가 공사를 시행하고, G동아파트에 관하여 부스터펌프 변경, 발코니 배수배관 변경 등의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서산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G동아파트 추가 공사대금'이라 한다).

서산아파트	1	저수조 변경	686,600
2	무동력 벤치레타 및 좌대	1,313,045	
3	덕트 제작 설치공사	26,238,160	
4	휴지걸이박스	1,415,406	
	합계	29,653,211	
G동아파트	1	부스터펌프 변경	1,523,776
2	발코니 배수배관 변경	2,078,974	
3	난방분배기 변경	16,056,228	
4	행가펜	3,574,821	
5	1층 보온작업	6,589,081	
6	휴지걸이박스	4,544,747	
7	도기설치공사 변경	3,944,215	
	합계	38,311,842	

○ 한편 서산아파트, G동아파트의 배수배관, 급수배관의 시공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서산아파트에 대하여는 27,166,830원(이하 '서산아파트 하자보수비'라 한다), G동아파트에 대하여는 8,847,111원(이하 'G동아파트 하자보수비'라 한다)이 소요된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비'라 한다).

나. 공사대금의 공탁 등

○ 피고 B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B이 79,631,200원을 들여 직접 공사를 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03,062,698원 중 위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23,431,498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라며 2018. 7. 30. 광주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3,431,49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 원고는 서산아파트, G동아파트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49,94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금'이라 한다)을 I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수령해야 할 공사대금은 서산아파트 43,341,997원(= 미지급 공사대금 13,688,786원 + 추가 공사대금 29,653,211원), 서산무인텔 26,048,000원, G동아파트 147,393,043원(= 미지급 공사대금 63,325,912원 + 추가 공사대금 84,067,131원2))인데, 그중 ① 서산아파트 하자보수비 27,166,830원, G동아파트 하자보수비 8,847,111원을 각 추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② 이 사건 공탁금과 이 사건 양도금 합계 73,371,498원을 G동아파트 미지급 공사대금(63,325,912원)에서 먼저 공제하며, ③ 위 ②항 공제 후 나머지인 10,045,586원을 서산아파트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의 지급을 구한다.

공사대금 (A)	미지급 공사대금 13,688,786원	추가 공사대금 29,653,211원	26,048,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63,325,912원	추가 공사대금 84,067,131원
공제 (B)	공탁금·양도금 중 10,045,586원	하자보수비 27,166,830원	-	공탁금·양도금 중 63,325,912	하자보수비 8,847,111원
청구금액 (A-B)	3,643,200원	2,486,381원	26,048,000원	75,220,020원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107,394,601원(= 3,643,200원 + 2,486,381원 + 26,048,000원 + 75,220,020원), ② 서산아파트의 공동 하도급인인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6,129,581원(= 3,643,200원 + 2,486,381원), ③ G동아파트의 공동 하도급인인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75,220,02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①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산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중 저수조 변경 부분 및 G동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중 휴지걸이박스, 도기설치공사변경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G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중 난방분배기 변경은 1,430,121원만 인정되어야 하며, ②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돈은 이 사건 하자보수비 외에도 서산아파트 난방배관 마감불량 등 하자보수에 지급된 비용 합계 24,215,000원(이하 '선지급 하자보수비'라 한다)이 추가되어야 하고, ③ 원고가 공사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지체상금 60,128,588원[= 서산아파트 25,577,390원(= 계약금액 433,515,094원 × 지체상금율 0.1% × 지체일수 59일) + 서산무인텔 9,697,600원(= 계약금액 167,200,000원 × 지체상금율 0.1% × 지체일수 58일) + G동아파트 24,853,598원(= 계약금액 230,125,912원 × 지체상금율 0.1% × 지체일수 108일)]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하 '피고 B 부담금액'이라 한다)은 합계 151,266,082원,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비 등(이하 '원고 부담금액'이라 한다)은 합계 120,357,529원이다.

피고 다인 종합건설 부담금액	미지급	13,688,786	미지급	30,088,000	미지급	63,325,912	151,266,082
	추가	28,966,6113) 서산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29,653,211 원 - 저수조 변경 686,600원	추가	-	추가	15,196,7734) G동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38,311,842 원 - 난방분배기 변경 16,056, 228원 + 1,430,121원 - 휴지걸이박스 4,544,747원 - 도기설치공사 변경 3,944,215원	
원고 부담금액	하자 보수비	51,381,8305) 서산아파트 하자보수비 27 ,166,830원 + 선지급 하자보수비 24 ,215,000원	하자 보수비	-	하자 보수비	8,847,111	120,357,529
지체 상금	25,577,390	지체 상금	9,697,600	지체 상금	24,853,598		

위 각 금액에 이 사건 공탁금, 이 사건 양도금을 반영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42,462,945원[= 원고 부담금액 120,357,529원 - (피고 B 부담금액 151,266,082원 - 이 사건 공탁금 23,431,498원 - 이 사건 양도금 49,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

3. 판단

가. 추가 공사 범위 및 추가 공사대금

1)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서산아파트 추가 공사대금은 29,653,211원, G동아파트 추가 공사대금은 38,311,842원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G동아파트 지하층 덕트 설치비 16,102,078원이 추가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G동아파트 설계도면에 지하층 덕트에 관한 시공 지시가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설계도면과 달리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정하여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하층 덕트 설치 부분은 G동아파트 하도급공사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피고들도 추가공사 요구는 인정함'이라고 주장하나(2020.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7면), 피고들은 서산아파트 덕트 공사 지시를 인정하였을 뿐(2020. 3. 19.자 피고들 준비서면 제5면) G동아파트에 관하여는 '지하층 덕트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20. 3. 19.자 피고 준비서면 제8면)].

3) 한편 피고들은 ① 당초 설계도면상 큰 저수조 가운데 칸막이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2개의 분리된 저수조를 가져왔다가 다시 한 개의 저수조를 설치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산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중 저수조 변경 부분은 제외해야 하고, ② G동아파트 난방분배기 변경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은 각방 난방 온도조절기 설치비용 16,056,228원에서 기존 계약내역에 포함된 중앙온도조절기 설치비용 14,626,107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430,121원만 인정해야 하며, ③ G동아파트 휴지걸이박스 부분에 관하여는 벽체매립형 휴지걸이 설치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자재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 추가 공사대금은 인정할 수 없고, ④ 고급형 위생도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무비 등 기타비용이 추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G동아파트 도기설치공사 변경 부분 추가 공사대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산아파트 설계도면상 업무시설 저수조 용량은 각 154ton, 21ton으로 구분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큰 용량의 저수조 가운데 칸막이로 구분된 형태인 사실, 실제 시공 시에는 설계도면보다 용량이 큰 181.25ton 저수조가 설치된 사실, 감정인은 설계도면상 저수조와 실제 시공된 저수조의 자재비 차액을 산정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686,6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감정인이 산정한 위 추가 공사대금은 용량 변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일 뿐 저수조 형태의 변경과는 무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등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G동아파트 각 방에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사실, 각 방 온도조절기 설치(156개소)에 따른 공사비는 16,056,228원인 사실, 기존 계약 내역에 포함된 난방분배기 설치비용은 14,626,107원이나 위 금액은 각 방 온도조절기 설치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실7) 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추가 공사대금은 중앙온도조절기 설치비용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계약견적서, 설계도면에는 휴지걸이의 상세 규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현재 G동아파트에는 벽체매립형 휴지걸이가 시공된 사실, 감정인은 벽체매립형 휴지걸이와 일반형 휴지걸이의 시공비 차액을 4,544,747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벽체매립형 휴지걸이 시공은 추가 공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은 4,544,747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벽체매립형 휴지걸이 시공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피고 D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 피고 D이 원고에게 휴지걸이 자재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④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D은 G동아파트 위생도기 자재를 원고에게 공급한 사실, 위 위생도기는 이른바 고급형으로 일반형 위생도기 설치에 비해 노무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사실, 감정인은 고급형 위생도기 설치와 일반형 위생도기 설치의 차액을 3,944,215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고급형

위생도기 설치하는 추가 공사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은 3,944,215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비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서산아파트 하자보수비는 27,166,830원, G동아파트 하자보수비는 8,847,111원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서산아파트에 관한 선지급 하자보수비 24,215,000원이 원고가 지급할 하자보수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27, 28, 33, 34, 35, 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 2019. 8. 14.부터 2019. 8. 16.까지 서산아파트 전 세대 누수점검, 하자보수 요청세대 방문 보수작업을 시행하였고 그에 관한 비용은 1,800,000원인 사실, ㉡ 2019. 8. 14.부터 2019년 9월 사이에 서산아파트 K호의 천정철거, 석고보드 및 도배 시공, 등박스 부분 누수 재시공 등 누수피해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그에 관한 비용은 3,575,000원인 사실, ㉢ 2018. 2. 19.경 1층 천정 배관 수정 등 하자보수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그에 관한 비용은 3,300,000원이고, ㉣ 2018. 3. 6. 'L호 입주자 차량 고드름 낙상 차량파손 수리' 비용으로 800,000원을 지출한 사실, ㉤ 기계실 침수로 인해 2017. 12. 19.경 모터 베어링 교체, 판넬 구입 등을 하였고, 2018. 1. 5.경 소방모터 보수공사 시행, 2018. 2. 21.경 배수펌프 교체를 하였으며, 그에 관한 비용은 합계 19,78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이 2019. 5. 3. 서산아파트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들은 감정 신청 및 현장조사 당시 위 각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의 서산아파트 현장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하자보수 내역(위 ㉠, ㉡ 부분)이나 1층 천정 배관 하자, 기계실 침수 하자에 대한 보수 내역(위 ㉢, ㉣, ㉤ 부분)이 원고가 시행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지체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산아파트, 서산무인텔, G동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일부인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한 사실, 공사 당시 원고는 피고들 측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을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인원 수급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당사자 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사실, 피고 B은 2017. 10. 20.부터 2018. 2. 8.까지 네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도 원고의 공사 지연이나 지체상금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공탁금을 산정할 때 지체상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서산아파트, 서산무인텔, G동아파트의 전체 공사 진행이 원고로 인하여 늦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서산아파트의 공동하도급인인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43,341,997원(= 미지급 공사대금 13,688,786원 + 추가 공사대금 29,653,211원), ② 피고 B은 서산무인텔 미지급 공사대금 26,048,000원, ③ G동아파트의 공동하도급인인 피고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101,637,754원(= 미지급 공사대금 63,325,912원 + 추가 공사대금 38,311,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비, 이 사건 공탁금, 이 사건 양도금을 각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항목의 금액8) 및 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제방법을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의 총액에서 이 사건 하자보수비, 이 사건 공탁금, 이 사건 양도금의 합계를 전액 공제하는 방법을 주장한다.

서산아파트 하자보수비, G동아파트 하자보수비는 각 해당 채무에서 이를 각 공제하면 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위 각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 이 사건 양도금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공제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공제방법은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산아파트, G동아파트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변제이익, 이행기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하자보수비는 각 해당 채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이

사건 양도금은 채무액에 비례(서산아파트 30%, G동아파트 70%)9) 하여 각 채무에서 공제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금(A)	공사대금	43,341,997	26,048,000	공사대금	101,637,754
	하자보수비	27,166,830	-	하자보수비	8,847,111
공제(B)	이 사건 공탁금 23,431,498원	7,029,449	-		16,402,049
이 사건 양도금 49,940,000원	14,982,000	-		34,958,000	
지급액(A-B)	-5,836,232	26,048,000	41,430,594		

3) 결국 서산아파트에 관하여는 피고 B와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고(오히려 원고가 피고 B, 피고 C에 5,836,23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산무인텔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6,048,000원, G동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D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30,59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67,478,594원(= 서산무인텔 26,048,000원 + G동아파트 41,430,5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1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1,430,5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산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 피고 C에 5,836,232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5,836,2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B,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일호

판사임영실

- 1) 원고는 '피고 H'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 C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2) 위 금액은 이 사건 감정결과상 서산아파트와 G동아파트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 금액인데, 원고는 위 금액을 G동아파트의 추가 공사대금으로 오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앞서 인정된 G동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38,311,842원에 지하층 덕트 설치비 16,102,078원을 더한 54,413,920원(이 사건 감정결과상 G동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부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서산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29,653,211원 - 저수조 변경 686,600원
- 4) G동아파트 추가 공사대금 38,311,842원 - 난방분배기 변경 16,056,228원 + 1,430,121원 - 휴지걸이박스 4,544,747원 - 도기설치공사 변경 3,944,215원
- 5) 서산아파트 하자보수비 27,166,830원 + 선지급 하자보수비 24,215,000원
- 6) 반소 청구 중 서산아파트와 G동아파트에 관한 부분은 피고 B이 공동도급체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등 참조).
- 7) 감정인은 최초 감정 시 난방분배기 변경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을 14,626,107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를 오류로 인정하고 이 부분은 제외하였다.
- 8) 피고들은 선지급 하자보수비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하자보수비 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9) 서산아파트 $43,341,997\text{원} \div (43,341,997\text{원} + 101,637,754\text{원}) \times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 G동아파트 $101,637,754\text{원} \div (43,341,997\text{원} + 101,637,754\text{원}) \times 100$